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

의안 번호	3102
----------	------

발의년월일 : 2017. 12. 15.
발의자 : 정승현 의원 외 14명

1. 주 문

- “불임 결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 2018년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질 것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 지방분권을 국회 또는 정부의 개헌안에 반영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대적 사명이다.
-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지방선거가 다시 부활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에 모두가 공감.
- 지방자치의 확대,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 를 보장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시민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제도의 정비를 요구하고,
-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분권적 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이 실행되기를 강력히 결의 함.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

대한민국 제헌헌법부터 보장되어 온 지방자치제도는 1961년 5.16 군사정부에 의해 중단된 이후 1987년 민주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현행 헌법이 탄생되고,

1991년 지방의회의 재 출범과 함께 1995년 지방선거가 부활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완연한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 크나큰 진보와 변화를 거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머물러 있음은 물론, 현행 헌법은 이러한 변화와 시대상을 반영하는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었다.

결국, 권한과 재원이 모두 중앙에 집중될 수 밖에 없었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는 지방소멸 가속화 등 국가적 정책실패와 국민적 분노를 낳고 말았다.

현행 헌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은 이 같은 법령의 지나친 간섭으로 조례제정권 한계에 부딪쳐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지방자치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아가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입법권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의 자립도와 자주도가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재정 구조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을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는 조례로써 지방세를 신설할 수 없어 스스로 자체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헌법은 자치단체의 조직과 사무범위를 자주적인 조례에 의하도록 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조직의 획일성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완전한 자방자치 실현에 대한 목소리를 통해 중앙정부에 항거(抗拒)하고 있다.

다름 아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우리 국민은 충실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최근 중앙정치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시대적 사명이다.

지금이야말로 명목적·소극적 지방자치를 실질적·적극적 지방자치로 전환 할 적기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우리는 지방분권 정신을 새로운 국가질서로 채택하여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

이에 안산시 의회는 75만 시민과 함께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 하는 분권적 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이 실현되기를 강력히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강화로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되도록 완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사무와 간섭을 줄이고 독립적인 자치 주체로서 지방정부와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라.

하나, 현재 8 : 2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불합리한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 세의 종목과 세율은 지방정부에서 정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과세권을 보장하라.

하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온전한 자치입법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량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열린 협의의 장을 마련하라.

2017.12.15.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